건설근로자 고용평가에 관한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평가 신청자”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받고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4. "시공능력평가"란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평가기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평가서류의 제출 및 검토) ① 평가기관은 평가업무의 효율성 및 평가결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장에게 평가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 신청자의 서류제출을 갈음하거나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평가기관은 해당 건설사업자의 당해년도 고용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가점우대의 세부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점수에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건설사업자로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가족친화인증서 사본을 제출한 자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건설사업자로 각 현장별 해당시설의 설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년도에 신규로 계약한 전체 건설현장 목록, 신규 건설현장 중 해당시설이 설치되어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확인한 건설현장 목록, 현장별 시설 설치사진, 설치내역서 등)를 제출한 자
3. 「근로복지기본법」제61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건설사업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와 전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기 및 금액이 기재된 서류,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4. 「근로복지기본법」제81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동법 제82조를 준수하여 운영한 건설사업자로 전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전년도에 제공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제5조(등급산정의 세부기준)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고용평가 등급을 부여하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점수가 음의 수인 건설사업자는 등급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전년도 및 전전년도 고용평가 점수에 소수점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전년도 고용평가가 1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부여한다.

④ 평가 신청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는 전년도 시공능력평가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를 구분한다.

제6조(평가자료의 보관·관리 및 전산화) ① 평가기관은 평가근거자료를 기록하고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으로 기록하고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3조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평가신청 및 서류제출, 평가자료 전산관리 등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평가결과 공시) 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결과는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또는 평가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시한다.

② 평가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사업자등록번호
4. 고용평가등급

제8조(우대사항 적용) ①평가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평가 결과를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동법 제23조의 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를 위탁받은 자는 동 지침 제7조의 공시 내용을 확인하여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평가 신청자가 제출서류를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연도의 평가등급을 취소하고 이를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